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9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조인철・이건태・박용갑

이개호 • 주철현 • 한정애

문진석 • 안도걸 • 양부남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,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%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,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.

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 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3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3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	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		
한 감면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	한 감면) ①		
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			
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			
조에서 "유치원등"이라 한다)으			
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			
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			
세를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면	<u>2034년 12월 31일</u>		
제하고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			
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			
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			
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			
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			
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			
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			
분의 50을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	<u>2034년 12월 31일</u>		
지 경감한다.			
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	②		
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			
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			
한다)를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34년 12월 31일</u>		
면제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